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요

글 · 김영국 대표이사
(주)대영비데
감수 · 정태련 변리사

목 차

1. 재산권
2. 저작권
3. 무체 재산권
4. 변리사
5. 산업재산권
 - 1) 특허
 - 2) 실용신안
 - 3) 의장권
 - 4) 상표

재산권(財産權)

재산에 대해 인정되는 사권, 즉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권리이다. 소유권 등의 물권, 금전 청구권 등의 채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주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격권 등의 비재산권은 권리주체의 인격이나 신분과 결합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산권은 보통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공의 필요로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산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하면 형사책임이나 민사 책임을 진다. 전자는 고의를 원칙으로 하고, 후자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한다.

저작권(著作權)

넓은 뜻으로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일반을 말하고, <저작자 인격권>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지칭한다.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연혁적으로는 재산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 인격적 측면도 중시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

는 재산권이며, 저작물을 이용과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한다. 공공적 견지에서 타인의 이용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인정된다. 저작권의 내용인 복제·번역·편집·개작·홍행 등의 각 부분적 권능은 각각 분리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재산권의 하나로서, 발명·고안·저작 등 정신적 그리고 또 지적 창조에 의한 무형의 객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며 상호권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것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과는 달리 비유체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그래서 무체물권 또는 정신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적 분쟁이 야기되기 쉬워서 각종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변리사(辨理士)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행정심판·소송, 기타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특허청에서 5년 이상 법정직에 종사한 자 등이다.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

산업상의 의장이나 발명 등을 독점하여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네가지로 나뉜다. 넓은 뜻으로는 서비스마크·상호 등도 포함된다. 산업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취급되며 산업상의 이익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이다.

특허(特許)

광의로는 특정인을 위한 특정의 권리·권리능력·행위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그러나 협의로는 일정한 발명자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대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다. 특허출원은 권리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위해 선원주의(先願主義)를 취한다. 선원주의란 특허권이나 광업권 따위에서는 둘 이상의 출원(出願)이 있을 때 먼저 출원된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주의를 말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만에 공개되며, 침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출원후 5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등록 공고 후 3개월의 의의신청기간을 두어 특허권의 유지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또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부여된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산업적 사망이나 타인의 권리 등의 관계에서 그 효력에 대한 제한도 있다.

실용신안(實用新案)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을 종래의 것과 바꾸는 일로서, 경제·오락·교육 등을 포함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낳게 하는 고안을 말한다. 여기서는 방법에 관한 고안은 제외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그 권리를 독립적이며 배타적으로 가지고, 이는 무체재산

권의 성질을 띤 사권(私權)이며 공업소유권의 하나이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한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사용·판매 등을 10년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장권(意匠權)

등록한 의장 곧 물건의 디자인이나 그것에 유사한 의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도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경영적으로는 상표와 유사하며 그 등록의장을 실시한 상품의 판매촉진에 도움이 된다.

이의 등록 요건은 첫째 물품의 형상·무늬·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미적(美的) 고안이다. 둘째 공업상의 이용가능성·신규성(新規性)·창작성이 있는 것이다. 특허청에 등록한 후 15년간 존속하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상표(商標)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표지(標識)이다. 이것은 상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인(商人)을 표시하는 상호와는 다르다.

상표는 자타(自他) 상품의 식별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품의 출처표시기능·품질보증기능·광고선전기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용을 얻어, 상표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것은 등록상표로서 그 상표권이 보호된다.

상표법에서는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히 현저한 것을 말한다.

전기용어사전

persistent current 지속전류(持續電流)

초전도 상태에서는 전기저항이 완전히 0이 되므로 예를 들면, 고리모양의 납에 전류를 흘리면 납이 초전도 상태에 있는 한 전류는 영구히 납 고리 속을 흐른다. 이러한 전류를 지속 전류라 한다. 이것을 이용한 기억소자가 IBM사에 의해 제안되었다.

phase compensation 위상보상(位相補償)

자동 제어계 혹은 부궤환 증폭기에서 그 개(開) 루프 이득이 0dB이 되는 주파수에서의 위상 지연이 180° 가까이 되면 계(系)의 안정도가 저하하여 동작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진상(進相) 회로, 지상(遲相) 회로 기타의 회로를 써서 계의 위상의 주파수 특성 일부분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바람직한 위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사용되는 주파수 선택성을 가진 회로(필터 혹은 등화기)를 보상 회로라 한다. 위상 보상은 비교적 간단하고 염가로 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